

「빅팟(BIGPOT) 정기예금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“빅팟(BIGPOT) 정기예금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『거치식예금 약관』을 적용한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한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 또는 법인으로 한다.

제4조 가입기간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하 일단위로 자유롭게 지정 가능하다.
단, 만기 1개월 전에는 추가입금이 불가능하다.

제5조 최초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한다.

제6조 추가입금

이 예금의 추가입금은 1백만원 이상 가능하며, 예금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.

제7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 예금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
- ② 예금의 신규일 이후 추가 입금 금액에 대해서는 입금 건별로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입금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한 ‘고단위플러스’ 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.
- ③ 만기일 전에 고객이 지급청구 할 때에는 입금 건별로 입금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 신규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‘고단위플러스’ 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.
- ④ 개인가입자에 한하여 자녀의 결혼, 출산, 유학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는 입금 건별로 입금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 신규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‘고단위플러스’ 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
- ⑤ 만기일 이후 고객이 지급청구 할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 신규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‘고단위플러스’ 만기 후 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.

제8조 이자지급방식

이 예금의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.

제9조 분할해지

- ① 만기해지 포함 총3회까지 분할해지를 허용한다.
- ② 분할해지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.
- ③ 분할해지 후 예금잔액은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인 1백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.

<부칙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됩니다.

